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48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6년 5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5 May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I.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배경 및 경과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어이며, 네트워크 카메라와는 구별되는 용어임.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위주로 설치되었던 CCTV가 아동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으로 설치가 의무화됨.

현재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의 100%가 CCTV를 설치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 CCTV 설치로 인한 관리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함.

-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

CCTV는 의무화 이전부터 이미 전국 어린이집 43,763개소('15년 1월 기준) 중 31.6%에 해당하는 13,822개소에 설치됨. 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심으로 각각 77.1%, 72.6%의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가정어린이집(10.6%)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았음.¹⁾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5.5.18.)으로 CCTV의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등이 마련됨.

-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와 운영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하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²⁾

가이드라인에는 영유아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설치구역 및 예외, CCTV 성능기준, 설치 시 준수사항, 안전성 확보 및 점검, 관리 책임자 지정 및 내부 관리계획, 저장 및 보관기관 열람요청, 위탁, 비밀유지 등의 내용이 제시됨.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2016년 1월 기준으로 모든 대상 기관이 설치를 완료함 (보건복지부, 2016).³⁾

전국 총 42,324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7개소)⁴⁾을 제외한 설치 대상 38,607개소(91.2%)의 100%가 CCTV 설치를 완료함.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10개 시·도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관리 실태에 대해 '설치기준, 운영관련, 안전성 확보조치'의 3개 분야 총 16개 항목을 점검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연구과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강은진·이정림·조혜주, 2015)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49.

2)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하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p.2.

3)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CCTV 확인 점검 결과 보고서(2.5). 내부자료.

4) 2016년 1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42,324개소이며, 설치예외기관은 기요건충족, 미설치동의, 네트워크카메라 설치기관임.

- 설치 후, 관련 공무원과 보육교직원 대상의 CCTV 관련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CCTV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 방법을 제시함.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 관리 교육을 실시('16 3.3~3.4)하여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지자체별로는 보육교직원 대상 자체교육을 실시함.

2016년 개편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교과목에도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관리'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원장 일반직무교육)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들의 CCTV 관리 방법과 유의점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함.⁵⁾

II.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여전히 남은 문제들

CCTV 설치 의무화 후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유용함. 반면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원인으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보장과 교사 인권 침해간의 상충 해소, 현장적용의 세부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과제가 남아 있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아동학대 발생장소와 행위자인 어린이집과 교사의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는 아직 없음. 다만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 중 일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아동학대 증거 확보가 용이해졌다고 함.

그러나 현장적용 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타 원아와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음.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CCTV로 인한 인권보호와 침해의 충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문제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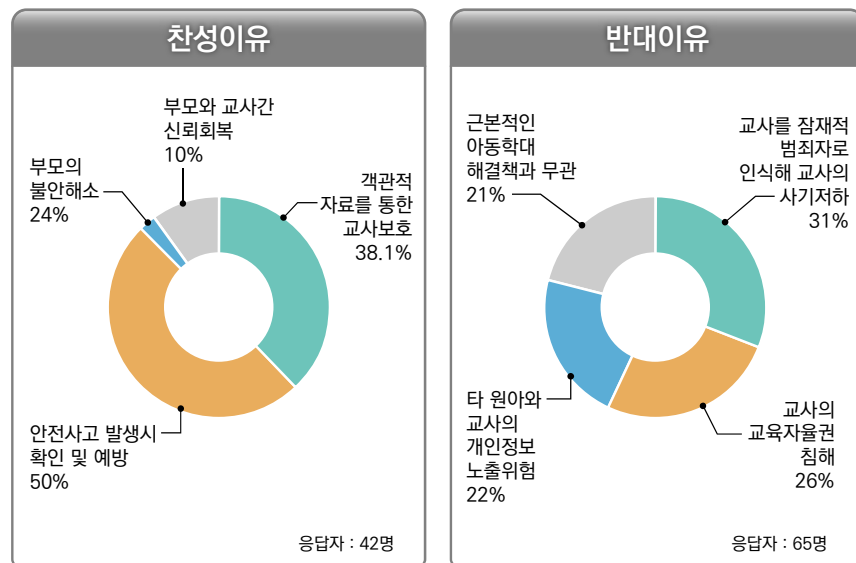
교사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사기저하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위험을 꼽고 있음.

- 아동학대 정황 파악을 위한 부모의 영상자료 공개 요구에서 여전히 보육교사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CCTV 설치 의무화 발표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의 60.7%가 CCTV 설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로 '사기 저하', '교육 자율권 침해',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등에 대해 우려하였음. 반면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를 들었음.

5) 이미화·강은진·김은설·김동훈·김아름·최지은(2015).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6) 이관후·조희정(2015).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2), p.93



주: CCTV 의무화 직후, 서울·경기지역 보육교사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강은진 외(2015).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와 운영 방안: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97-99.

[그림 1]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보육교사의 찬·반 이유

영유아보육법은 CCTV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와 침해의 충돌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 CCTV 설치·운영 지침이 있으나 일부내용이 현장적용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현재 설치구역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하도록 제시됨. 그러나 교직원 휴게실도 마련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7개의 카메라로 촬영하므로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무리임.⁷⁾ 설치예외 규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됨. 현재 CCTV는 영유아보육법, 네트워크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할을 받도록 되어 있어 문제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제재조치가 어려움.
 CCTV나 영상기록물 파일 등에 대한 외부업체 위탁운영·관리가 가능하나, 안전조치 및 점검 사항에는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음.
 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III. 제언

CCTV 설치 취지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CCTV의 본래 설치 취지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는 기존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침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함.
 어린이집과 같이 공사 구분이 불분명한 폐쇄 공간에서의 CCTV 촬영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휴게 공간이나 교사실은 CCTV 설치 예외 공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7) 이관후·조희정(2015).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2), p.95

어린이집 원장 등이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는 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관계자의 CCTV 열람 자료 확보는 용이하도록 하되, 영상 기록물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엄격히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누설에 대한 제재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신규로 CCTV를 설치한 기관은 주로 소규모 어린이집이므로, CCTV 설치 이후 올바른 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어린이집의 CCTV 설치·관리 실태의 점검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기관과 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열린 어린이집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함.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

부모감시에서 부모참여로의 관점 전환을 통해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확대하여,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 가정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일부 CCTV를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소개되나, 동료와 선임교사의 멘토링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적절함.

강은진 연구위원 ejkang@kicce.re.kr